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조〉
■ 백중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1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4. 14.
3. 회 부 일 : 2026. 0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계획수립 등 협조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명시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관계 중앙행정기관</u>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 ----- ----- ----- <u>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u> ----- ----- ----- ----- ----- ----- -----.

□ 이 법은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발굴하여 사례관리와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 2025년 3월 25일에 법률 제20846호로 제정되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위기아동·청년</u>”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u>사회보장급여</u>”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u>사례관리</u>”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장 위기아동·청년 지원 절차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제10조(도움필요 아동·청년의 발굴) 제11조(사례관리 신청) 제12조(상담) 제1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4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제16조(건강관리 지원)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제18조(주거지원) 제19조(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제20조(고립·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제21조(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법 제6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법 제7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이 법은 올해 3월에 시행되었으므로 아직 기본계획이
나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가 진행 중임.

□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
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법 제8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9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도움필요 아동·청년이 발굴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해당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담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 한편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 함께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주체로 정하고 있음.

-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1항),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2항).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이러한 책무는 계획 수립, 급여 제공, 전달체계 운영, 대상자 발굴의 각 단계에 걸쳐 개별 조문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단계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계획	제7조제1항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제7조제2항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제7조제3항	제출한 추진실적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 대상
급여 제공	제15조·제16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집단프로그램·자조모임 운영, 영양·건강 교육 및 건강검진 등 제공
	제17조·제18조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19조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
	제20조·제21조	고립·은둔 판단을 위한 표준척도·지표 개발·보급,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전달 체계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업무 수행 평가 및 지정·위탁 취소, 운영 경비 지원
발굴	제24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거주지 현장방문
권한 위임	제30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주체이자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및 평가의 주체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역별 현황과 사례관리 운영자료를 보유하는 위치에 있음.
- ☐ 개정안은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그 협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이해됨.
- ☐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인구전략기본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인구전략기본법」
제35조(업무의 협조)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u>지방자치단체</u> 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u>지방자치단체</u> ,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u>지방자치단체</u> ,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아동 청년 관련 데이터 및 각 지원체계들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